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던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지방항공청 인력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에 주택토지실 2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99.99. ~ 99.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제1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3호 중 “기업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시화 방조제·조력발전소의 건설 및”을 “시화방조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새만금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4. 도시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16.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토지 인허가 간소화 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18.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발전, 사업지원
19.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20. 국토이용 및 도시·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관리
2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용자·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 토지이용규제제도(평가, 제도개선 등 포함)의 운영 및 연구·발전
24.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5.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6.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

제7조제14항 제14호, 제15호,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스마트 실증사업 및 혁신사업 등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사항
29.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발전
30.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제7조제15항 제20호,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수소도시 조성 지원 및 연구·발전
4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제7조제1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지원

제7조제18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제7조제19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건축설비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제7조제20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1항제3호 중 “건축물의”를 “건축자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10.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 및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11. 건축 구조·재료 모니터링 및 기술기준, 국가표준의 관리

12. 건축물 해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2.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발전

제8조제16항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제8조제17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5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설업의 등록·폐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24.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2. 기계설비법령 및 관련 기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제7항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중 “미주·아프리카”를 각각 “북미·아프리카(사하라이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건설협력위원

회”를 “협업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지도·감독

20.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제9조제8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오세아니아 지역”을 각각 “오세아니아·중남미·아프리카(사하라이북)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협력위원회”를 “협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9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등 제도운영 및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

7.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항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11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설계·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9.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감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제10호 중 “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을 “부문”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항”을 “사항(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BHS(수화물)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운영 등 항공금융에 관한 사항

24. 항공물류정책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제12조제9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8항제7호 중 “인천국제공항”을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안전환경과장”을 “공항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시설 운영 및 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발전

23. 공항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BHS(수화물)사용료에 한한다)

제12조제20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제12조제21항제9호 중 “신규 비행장”을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육상·수상 비행장, 헬기장,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6호 중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을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도로공사”를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공사의 총괄·조정

제13조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로 분야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1호 중 “일반국도”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국도”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로 한다.

제13조제7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도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제8항 제17호,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업”을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23.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4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제32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3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8항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조달청 공무원으로”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61조제10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06”을 “1,0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9”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7”을 “60”으로 하고, 항공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0”을 “1,014”로 하고, 일반직 계 “999”를 “1,003”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7”을 “60”으로 하고 항공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8 중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9 중 시설서기보 “32”를 “36”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89”를 “209”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18”을 “14”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8”을 “38”로 한다.

별표 9의2 중 시설서기보 “32”를 “36”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89”를 “209”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18”을 “14”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8”을 “38”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613”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613”을 “612”로 하며, 항공주사보 “170”을 “169”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를 “1”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613”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613”을 “612”로 하며, 항공주사보 “170”을 “169”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5”로 하며, 사

무운영서기보 “4”를 “1”로 한다.

별표 19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 담당관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 철도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 항공교통정책과	2명 (6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20 제1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6호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하고, 총계 “2”를 “1”로 하며, 일반직 계 “2”를 “1”로 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한다.

별표 20 제8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⑦ (생략)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u>
18. 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19. (현행 제18호와 같음)</u>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⑫ 복합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기업도시위원회의</u> 구성 · 운영	3. <u>도시개발위원회</u>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u>시화 방조제 · 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1. <u>시화 방조제</u> ----- -----
<u>12.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u>	<u><삭 제></u>

지정 · 고시

13. ~ 14. (생략)

<신설>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발전

4.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 · 발전

5. ~ 6. (생략)

7. 장기 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연구 · 발전

8.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 ~ 14. (현행과 같음)

15. 새만금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⑬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2. (현행과 같음)

1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 · 발전

14. 도시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 · 발전

16.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토지 인허가 간소화 제도 운영 및 연구 · 발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운영

18.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발전, 사업 지원

19.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20. 국토이용 및 도시·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관리

2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용자·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 토지이용규제제도(평가, 제도개선 등 포함)의 운영 및 연구·발전

24.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5.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6.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

⑭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 20. (생략)

2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 · 관리

2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 · 용자 · 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 ~ 2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⑮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발전

21. (생략)

2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영 및

<삭제>

16. ~ 2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3. ~ 27. (현행과 같음)

28. 스마트 실증사업 및 혁신사업 등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사항

29.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발전

30.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 · 제도 운영 및 연구 · 발전

⑮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1. (현행과 같음)

<삭제>

<u>연구·발전</u> 23. <u>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u> 24. <u>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25. <u>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26. <u>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u> 27. · 28. (생략) 29. <u>도시·군계획정보체계의 구축</u> 30. <u>국토이용 및 도시·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u> 31. <u>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 실적의 평가 및 정비</u> 32. <u>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의 조사·평가 및 정비</u> 33. <u>토지이용 관련 규제안내서의 작성·고시 및 관리</u> 34. <u>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u> 35. ~ 39.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27. · 28.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35. ~ 39. (현행과 같음) <u>40. 수소도시 조성 지원 및 연구</u>
---	--

<신 설>

<신 설>

①⑥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신 설>

①⑦ (생 략)

①⑧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건축자재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 21. (생 략)

<신 설>

①⑨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발전

4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
의 운영 및 연구·발전

4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①⑥ -----
-----.

1. ~ 17. (현행과 같음)

18.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지원

①⑦ (현행과 같음)

①⑧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21. (현행과 같음)

2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①⑨ -----
-----.

1. ~ 17. (현행과 같음)

18.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신 설>

㉔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3. (생략)

<신 설>

㉔ 건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건축물의 화재 관련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19. 건축설비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㉔ -----
-----.

1. ~ 33. (현행과 같음)

3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사항

㉔ -----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자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건축물의 -----

4.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10.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
및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11. 건축 구조·재료 모니터링
및 기술기준, 국가표준의 관리

12. 건축물 해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② ~ ②⑤ (생 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①② (생 략) ①③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u>10.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u> 11. ~ 16. (생 략) ①④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6.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u> 7. ~ 10.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①⑤ (생 략) ①⑥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①⑦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	②② ~ ②⑤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①② (현행과 같음) ①③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 16. (현행과 같음) ①④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 10. (현행과 같음) <u>11.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u> <u>12.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발전</u> ①⑤ (현행과 같음) ①⑥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u> ①⑦ -----
---	---

항을 분장한다.

1. ~ 3의2. (생략)

4.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발전

5. ~ 13. (생략)

⑮ ~ ㉔ (생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④ (생략)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⑥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건설업의 등록·폐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

-----.

1. ~ 3의2. (현행과 같음)

<삭제>

5. ~ 13. (현행과 같음)

⑮ ~ ㉔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1. ~ 20. (현행과 같음)

<삭제>

22. (현행과 같음)

23. 건설업의 등록·폐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24.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
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⑥ -----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7. (생략)

18.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
정성 심사기준 수립·운영

1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⑦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미주·아프리카 지역 국가
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16. 미주·아프리카 지역 국가

<삭제>

17. (현행과 같음)

<삭제>

19. (현행과 같음)

20.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
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발
전에 관한 사항

22. 기계설비법령 및 관련 기준
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
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15. 북미·아프리카(사하라이남)

16. 북미·아프리카(사하라이남)

와의 건설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17. 미주·아프리카 지역 국가
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18. 미주·아프리카 지역 핵심
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신 설>

<신 설>

⑧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
니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
니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
니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협의체-----

17. 북미·아프리카(사하라이남)

18. 북미·아프리카(사하라이남)

1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의 지도·감독

20.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⑧ -----

-----.

1. ~ 5. (현행과 같음)

6. -----오세아
니아·중남미·아프리카(사하
라이북) 지역-----

7. -----오세아
니아·중남미·아프리카(사하
라이북) 지역----- 협의체

8. -----오세아
니아·중남미·아프리카(사하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
니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0.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11. ~ 15. (생략)

⑨ 공정건설지원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
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⑩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라이북) 지역 -----

9. -----오세아
니아·중남미·아프리카(사하
라이북) 지역 -----

<삭제>

11. ~ 15. (현행과 같음)

⑨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
성 심사기준 등 제도운영 및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

7.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
표에 관한 사항

⑩ -----

분장한다.

1. ~ 22. (생략)

23.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4. (생략)

<신설>

⑪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
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수립 및
운영

8. 건축설계경기 제도 운영 및
연구

9. ~ 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⑫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22. (현행과 같음)

<삭제>

24. (현행과 같음)

25.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
에 관한 사항

⑪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9. ~ 17. (현행과 같음)

18. 설계·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
구·발전에 관한 사항

19.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
-----.

1. ~ 11. (생략)

12. 건설감리협회의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13. ~ 35. (생략)

<신설>

⑬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
반시설의 지정·관리

11. ~ 20.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⑥ (생
략)

⑦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
항

11. ~ 13. (생략)

1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
9권(출입국 절차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 35. (현행과 같음)

36. 감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⑬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부문

11. ~ 20. (현행과 같음)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에 관한 국제협력

15. ~ 20. (생략)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
용료에 관한 사항

22. (생략)

<신설>

<신설>

⑧ (생략)

⑨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⑩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항공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 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13. 국제항공물류의 동향분석 및
항공물류허브화 추진

15. ~ 20. (현행과 같음)

21. -----
----- 사항(착륙료, 조명
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
교사용료, BHS(수화물)사용료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현행과 같음)

23.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운
영 등 항공금융에 관한 사항

24. 항공물류정책 중·장기 계획
의 수립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7. (현행과 같음)

18.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
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⑩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4. ~ 19. (생략)

<신설>

⑪ · ⑫ (생략)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신설>

⑭ ~ ⑰ (생략)

⑱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의 수립

8. ~ 9. (생략)

10. 신공항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

11. ~ 15. (생략)

16. 헬기장,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생략)

<신설>

14. ~ 19. (현행과 같음)

20.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27. (현행과 같음)

28.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
-----.

1. ~ 6. (현행과 같음)

7. 공항 -----

8.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7. (현행과 같음)

18. 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①9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 21. (생략)

<신 설>

②0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 설>

②1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생략)

<신 설>

②9 공항운영과장-----
-----.

1. 공항시설 운영 및 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발전

2. ~ 22. (현행 제1호에서 제21호까지와 같음)

23. 공항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BHS(수화물)사용료에 한한다)

②0 -----
-----.

1. ~ 19. (현행과 같음)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②1 -----
-----.

1. ~ 8. (현행과 같음)

9.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

10. (현행과 같음)

11. 육상·수상 비행장, 헬기장,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설치

제13조(도로국) ①·② (생략)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u> 7.·8. (생략) 9. <u>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u> 10. ~ 13. (생략)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일반국도 사업계획의 수립·조정</u> 2. <u>일반국도 도로공사의 총괄·조정</u> 3. ~ 8. (생략) 9. <u>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 및 도로공사의 총괄·조정</u> 10.·11. (생략)	<u>및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3조(도로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u>----- ----- 7.·8. (현행과 같음) 9. <u>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u>----- 10. ~ 13. (현행과 같음) ④ ----- -----. 1. <u>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공사의 총괄·조정</u>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11. (현행과 같음)
--	--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 6. (생략)

7.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8.·9. (생략)

10.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11. (생략)

12. 일반국도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 ~ 15. (생략)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도로 분야 재정사업의 민간 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⑥ -----
-----.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2. ~ 6. (현행과 같음)

<삭제>

8.·9. (현행과 같음)

<삭제>

11. (현행과 같음)

12.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
--

⑦ -----
-----.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도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2. ~ 16. (현행과 제1호에서 제15호까지와 같음)

⑧ -----
-----.

1. ~ 16. (생 략) <u>17.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u> 18. (생 략) <u>19.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u> 20. <u>사업의 홍보, 정보화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u> <u>21. 그 밖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 ③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u>2.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u> 3. ~ 22. (생 략) ⑤ (생 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 ③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 18. (현행과 같음) <u><삭 제></u> 20.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u> <u><삭 제></u> <u>22.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u> <u>23.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u>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2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17. (생략) <u>18.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u> 19. (생략) ⑤ (생략)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생략)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략) <u>32.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u> 33. ~ 58. (생략) ⑤·⑥ (생략) 제61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u>③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u>	1.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1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3. ~ 5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1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
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철도
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⑧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
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
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

----- 202
5년 -----

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조달청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⑨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⑩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

<삭 제>

⑩ -----

⑪ · ⑫ (생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06</u>	<u>1,010</u>	+4
·	·	·	
·	·	·	
일반직 계	<u>995</u>	<u>999</u>	+4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7</u>	<u>60</u>	+3
·	·	·	
·	·	·	
항공주사보	<u>6</u>	<u>7</u>	+1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10</u>	<u>1,014</u>	+4
•	•	•	
•	•	•	
일반직 계	<u>999</u>	<u>1,003</u>	+4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7</u>	<u>60</u>	+3
•	•	•	
•	•	•	
항공주사보	<u>5</u>	<u>6</u>	+1
•	•	•	
•	•	•	

[별표 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0</u>	<u>30</u>	-
일반직 계	<u>30</u>	<u>30</u>	-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2</u>	<u><삭 제></u>	-2
<u>행정서기보</u>	<u><신 설></u>	2	+2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47</u>	<u>1,347</u>	-
일반직 계	<u>1,347</u>	<u>1,347</u>	-
·	·	·	
·	·	·	
시설서기보	<u>32</u>	<u>36</u>	+4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89</u>	<u>209</u>	+20
·	·	·	
토목운영서기보	<u>18</u>	<u>14</u>	-4
·	·	·	
기계운영서기보	<u>58</u>	<u>38</u>	-20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47</u>	<u>1,347</u>	-
일반직 계	<u>1,347</u>	<u>1,347</u>	-
·	·	·	
·	·	·	
시설서기보	<u>32</u>	<u>36</u>	+4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89</u>	<u>209</u>	+20
·	·	·	
토목운영서기보	<u>18</u>	<u>14</u>	-4
·	·	·	
기계운영서기보	<u>58</u>	<u>38</u>	-20
·	·	·	
·	·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3</u>	<u>612</u>	-1
일반직 계	<u>613</u>	<u>612</u>	-1
·	·	·	
·	·	·	
항공주사보	<u>170</u>	<u>169</u>	-1
·	·	·	
·	·	·	
행정서기보	<u>2</u>	<u>5</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1</u>	-3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3</u>	<u>612</u>	-1
일반직 계	<u>613</u>	<u>612</u>	-1
·	·	·	
·	·	·	
항공주사보	<u>170</u>	<u>169</u>	-1
·	·	·	
·	·	·	
행정서기보	<u>2</u>	<u>5</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1</u>	-3